

	<h2>AI·DX사업단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3-1-48
		제정일자	2026. 4. 1.
		개정일자	-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2026학년도 AID(AI+Digital)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」에 따라 본 대학의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’이라 함은 전문대학의 AI·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전환을 통해 AI 역량을 갖춘 전문기술 인재 양성 및 전문대학의 평생·직업교육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2. ‘AI·DX사업단’ (이하 ‘사업단’라 한다)이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내 설치된 전담 조직을 말한다.
3. ‘AI·DX’라 함은 인공지능(AI) 및 디지털 전환(Digital Transformation)을 의미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이 수행하는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(이하 ‘사업’이라 한다)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사업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AI·DX 교육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
2. 수요자 맞춤형 AI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
3. AID사업추진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에 관한 사항
4. 사업 성과관리 및 공유·확산에 관한 사항

### 제2장 사업단 운영

제5조(조직구성) ① 총장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사업단을 설치하고 사업 총괄책임자로 사업단장을 임명하며,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조직을 구성 운영 한다.

② 협력조직의 구성원은 사업 참여부서로 구성한다.

제6조(사업단장) ① 사업단장은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
2. 사업비 관리 및 성과관리 총괄
3. AI·DX 특화 모델 구축 및 운영
4. 교내 협력체계 조정 및 대외 협력 총괄
5.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하게 사업단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대학혁신최고위원회) ① 사업단은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전반의 성과에 대한 유기적 관

리·운영을 위해 대학혁신최고위원회(이하 ‘최고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최고위원회는 교내·외 전문가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9인 내·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은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 수립, 사업의 효율적 추진, 관리 등을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교내·외 전문가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9인 내·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AI·DX추진위원회) ① 사업단은 사업의 추진 전반에 관한 주요사항 추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AI·DX추진위원회(이하 ‘추진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추진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교내·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9인 내·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AI·DX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위하여 AI·DX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‘자체평가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내·외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자체평가의 투명성·효과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교원, 직원, 재학생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거버넌스) ① 사업단은 사업의 AI·DX특성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.

② 거버넌스는 Make, Expend, Growth, Advance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교내·외 전문가 6인 내·외로 구성한다.

③ 거버넌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AI·DX인력pool) ① 사업단은 AI·DX관련 제반 사항 자문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AI·DX인력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.

② 인력풀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③ 인력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13조(사업단 회계)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이 대학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,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 통장을 개설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관리·보전하여야 한다.

제14조(사업비의 집행) ① 사업비는 중앙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단

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.

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,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③ 사업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사업비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